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
----------	-----

제출년월일 : 2000. 1.

제출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제23조 제2항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
- 제23조 제3항 여성보건휴가 대상을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한 휴가(매월 1일)"까지 확대
- 제23조 제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
- 제23조 제9항 퇴직준비휴가 대상을 "명예퇴직, 조기퇴직,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까지 확대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기 타 : 강원도표준안(`99. 12. 2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시행령 제25조"를 "국민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 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공가)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u>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p> <p>6. ~ 8. (생 략)</p>	<p>제22조(공가) ----- ----- -----. 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u>-- ----- -----</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23조(특별휴가) ①(생 략)</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신 설></p> <p>④·⑤ (생 략)</p> <p>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 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제23조(특별휴가)①(현행과 같음)</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③----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p> <p>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 ----- 재직기간중에 ----- ----- -----.</p>

현 행	개 정 안
<u>⑦ (생략)</u>	<u>⑧ (현행과 같음)</u>
<p><u>⑧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 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u>⑨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u>⑨ (생략)</u>	<u>⑩ (현행과 같음)</u>
<p><u>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u></p>

관 계 법령 발췌 서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
2. 지역 피보험자중 세대주인 자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40세 이상인 자
 - 가. 지역 피보험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 나. 공무원 교육원 피보험자의 피부양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 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 사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u> 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u>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생 략)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

<신 설>

④ · ⑤ (생 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생 략)

⑧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
----- 재직기간 중에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 정년퇴직이나 -----
----- 명예퇴직 또는 조례로 -----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
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

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
를 얻을 수 있다.

⑨ (생 략)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
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
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